

	법률동향	2026. 7. 30.(목) 법무과장 이명희(☎32030) 법무행정팀장 최윤미(☎33724) 주무관 김덕영(☎33235)
---	---------------	---

8월 주요 시행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와 능력을 갖춘 6급 공무원이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을 신설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력은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50퍼센트를 인정하고,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로 추가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에 설비보전기능사 및 설비보전산업기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 운전면허 소지자는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외부 기관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현행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외부 기관이 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하는 주기는 매 분기 1회 이상으로,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수시 적성검사를 받기까지 지연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바, 외부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매월 1회 이상으로 단축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관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33호, 2026. 7.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와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나.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 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6조제3항·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
- 라.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491호, 2026. 6. 3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력은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 등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컴퓨터시스템기사를 추가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대상이 되는 자격증에 산림기능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업 등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2호, 2026. 2. 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이 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조기화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단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도로·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등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함(제2조제8호 신설).
- 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신설).
- 다. 서로 연결하지 아니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의 요건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도(道)에서 시·군으로 이관하며, 시·군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여함(제15조제2항 및 제22조).
- 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7항 신설).
- 마.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와 그 구성 및 기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9조제4항 신설, 제20조제3항).
- 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구체화하고, 목적이 동일·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함(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 사.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
- 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 자. 시·도지사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9조 신설).
- 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조 및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 및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40조 신설).

- 아동복지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로 정의함(제3조제8호의2 신설).
- 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민법」에 맞춰 친권상실 선고, 친권 일시 정지 선고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그 청구에 앞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8조제1항).
-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을 추가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2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4제1항).
- 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 사.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 등을 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함(제29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분석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29조의9 신설).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면담할 수 있고, 형사사법정보가 아닌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등이거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취학에 친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자 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0호, 2026. 2. 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피해금의 입금·이체·송금·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등을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를 마련하며,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분석·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택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 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 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바,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 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제14조제1항).
- 마. 정부는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바. 정부는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18조).
- 사.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관련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 아.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제1항 및 제3항).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1항).
- 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제35조 및 부칙 제3조).

- 고등교육법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2호, 2026. 2. 1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평가·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전담기관 근거 마련(제59조의3 및 제59조의4 신설)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도별로 지역혁신대학지원 위원회를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및 초광역전담기관 근거 마련(제59조의5 신설)

시·도 간의 협업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으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근거 마련(제59조의6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성과관리 근거 마련(제59조의8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등의 사업성과와 시·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특례의 적용, 변경 및 연장(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신설)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변경·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3호, 2026. 2. 1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각 시·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전략 수립 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08호, 2026. 7. 2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시·도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설치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지원기관과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시·도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초광역 전담기관을 시·도가 공동으로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332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역별 지원기관·전문기관 및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요건, 규제특례의 신청 방법 및 적용기간 연장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허가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추가하여 공정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제42조의4제3호 신설)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를 추가함.

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지역별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71조의2 및 제71조의3 신설)

1)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시·도지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지역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지원기관의 장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다.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제71조의4 및 제71조의5 신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다른 시·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관계 시·도지사는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초광역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2) 초광역전담기관에 두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계 시·도가 정하는 상호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시·도지사와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라.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71조의7 신설)

- 1)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에 재정·성과관리, 협업체계, 규제특례, 지방대학 육성, 특성화 지방대학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재정경제부,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의 차관을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마. 규제특례의 신청 방법, 관리·감독 및 적용기간의 연장 등(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 신설)

- 1)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특례신청서에 해당 규제특례가 학교의 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함을 설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규제특례 적용 직전 학년도의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고,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특례 적용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특례 연장신청서에 규제특례의 적용 결과 및 연장의 필요성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09호, 2026. 7. 2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시·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지원전략에 따라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3호, 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통보 등(제2조 및 제3조)

- 1) 시·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2)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수정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수정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시·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할 수 없는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

- 1)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작성하여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조정하여 작성한 지원전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세부 지원전략을 종합·조정하여 작성한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마을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마을기업’을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된 기업으로 정의함.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의 구성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마.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마을기업지원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고용보험법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연 1회,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0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효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5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며,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대군인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법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사실과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연구·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의 장은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향상과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폐기물관리법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1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동일한 1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처분권자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031호, 2025. 8. 2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수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 및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농수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고려하여 목적 중 ‘적정한 가격 유지’를 ‘가격안정 도모’로 함(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5조의3 신설).
- 라. 농림업관측 실시사항을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과 수요량 파악을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함(제5조의4).
- 마.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제5조의7·제5조의8 신설).

- 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인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고려하도록 함(제8조).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의 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함(제9조).
- 자. 농산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함.
- 차.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15조의2 신설).
-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시행 및 농수산물의 구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각각 운영하도록 함.
- 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제16조의4·제16조의5 신설).

- 농지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2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 농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지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인,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상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농지 수탁자에게 위임하도록 함(제7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 나.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 제한되는 상대방의 범위를 확대함(제10조제3항 신설).
-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제11조제1항 및 제5항).
- 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제2호).
-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농산어촌 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제3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호 신설).
- 바.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되는 관리 대상 농지의 목표 면적을 산출할 때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3항).
- 사.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등에 대한 출입 근거를 마련함.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4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납북된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납북자가족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관리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8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투약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함(제6조제9항).
- 나. 시·도지사는 법원·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함(제28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제41조제17호 삭제).
- 라.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근거, 수행 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을 규정하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및 제35조제2항).
- 마.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제34조의2).

- 여권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3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위험지역의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예비군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8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장 등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차장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나.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2조제6항 삭제).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 마.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 8. 30.] [행정안전부령 제633호, 2026. 7. 29., 일괄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거나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중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회 접수 의안 확인(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

○ 중앙부처 입법예고 내용 확인(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